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별정직 의사 채용공고

"일터에 안심, 생활에 안정, 일하는 모든 사람의 행복파트너"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에서 근무할 역량 있는 의사를 모집합니다.

2026년 11월 25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장

---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명

근무기관	직군(직렬)	진료과	채용인원
울산병원	별정직(의사)	이비인후과	1

▢ 근무기관 소재지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강변로 16

▢ 임용조건 및 근로형태

○ (고용형태) 별정직 의사

※ 3년 이내 임기(실적 등에 따라 연임 가능)

○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내부규정 및 병원 운영상황에 따름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평일 08:30 ~ 17:30) 원칙으로 하며, 직무특성 및 기관 운영상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 할 수 있음

○ (주거지원) 비연고 근무자 사택 제공

○ (학회지원) 연 2회 이내 공가 부여, 학회비 지원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 1-1] 참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붙임 1-2] 참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10년)

○ (병역사항)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재 군복무 중인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전역이 가능한 자

○ (기타)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령요건 : 제한 없음

▢ 자격요건 : 응시자격은 응시원서 마감일 기준

직군(직렬)	진료과	응시자격
별정직(의사)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3. 채용절차 및 일정

▢ 채용절차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응시원서 기재사항을 토대로 응시자격 및 서류 심사) → 면접전형 → 서류검증 → 최종 합격자 발표 →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

▢ 채용일정

세 부 내 용	일 정
•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 '26. 11. 25.(수) ~ 12. 11.(금) 17:30
• 서류전형 합격자 통보	• '26. 12. 18.(금)
• 면접전형 및 서류검증	• '26. 12. 28.(월) ~ 12. 31.(목)
• 최종합격자 통보	• '27. 1. 11.(월)
• 임용후보등록	• '27. 1. 11.(월) ~ 1. 18.(월)
• 임용일(예정)	• '27. 1. 25.(월)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1. 25.(수) ~ 2026. 12. 11.(금) 17:30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

※ [붙임 2-1, 2-2] 양식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마감 당일 17:30까지 도착·수신분에 한함)

※ 현 직장, 학교 등을 알 수 있는 메일 사용불가, 포털메일 사용(예. 네이버, 다음, 지메일 등)

○ 접 수 처 : 울산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자

소속기관	접 수 처	주 소	이 메 일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울산병원 경영기획부 인사담당자 (☎ 052-702-7380, 7101)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강변로 16, 3층 경영기획부 (우: 44934)	ulsan9in @comwel.or.kr

5.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26. 12. 18.(금) 예정 ※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 안내

○ 평가방법 : 응시 자격기준 해당자 전원 합격 처리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실시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합격자 발표시 개별 안내 예정)

※ 추후 증빙서류 검증과정을 통하여 증빙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합격 취소

6.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6. 12. 28.(월) ~ 12. 31.(목) 예정

○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 장소 :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 면접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증빙서류 지참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구체적 전형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공지

○ 면접전형 평가방법 및 배점 : 개별 면접

- NCS 분류체계에 따른 직무기술서상을 바탕으로 직업기초능력(의사소통, 대인관계), 직무수행능력(도전정신, 전문성, 직업윤리, 자기개발) 등 평가
-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미만 시 부적격 처리

▢ **증빙서류 제출(면접전형 시 반드시 지참)**

지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채용 관련 증빙 서류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시 직접 제출**

구분	제 출 서 류
공통 사항	①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석 · 박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포함) ③ 병적증명서 1부(남성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 및 세부항목 모두 필수기재)
해당자에 한함	①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국가보훈) 대상자 증명서 1부 ②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지자체발급) ③ 해당분야 전문 자격 관련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제출일 기준)로 한하여 인정. 다만 해당 발급기관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여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인정

※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7.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7. 1. 11.(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해 개별연락

○ (선발기준) 서류검증 결과 결격(부적격) 사유가 없고, 가산점수*를 포함한 면접점수가 평균 5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름

- 모집단위별(경쟁유형 · 직렬 · 권역)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일 경우(예외: 4명 미만이라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 부여, 그 외는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부여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후보합격자 유효기간 내 최종합격자 임용포기 또는 퇴사 시 공단사정에 따라 후보합격자 임용 가능

8. 임용후보자 등록 및 신체검사

▢ 임용등록 및 신체검사 기간 : 2027. 1. 11.(월) ~ 1. 18.(월) 예정

○ 신체검사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소속병원에서 실시

○ 임용등록 시 제출서류 :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및 각서 등

※ 공단 소정양식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임용일 : 2027. 1. 25.(월) 예정

※ 임용일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응시원서 작성 유의사항 및 제출서류 안내'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과정에서 허위사실 기재 또는 허위증빙서 제출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 및 면접시험 과정에서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수집, 요구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및 입사지원서 이메일, 자기소개서 등에 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성별 등은 **간접적 표현으로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직·간접적 표현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격 및 자격증 유효여부 등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경우도 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9호,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 제30조(신체검사) 3항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전형별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 이내에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180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사지원자가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통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14일 이내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채용 이의신청 양식 작성 후 접수처 이메일로 스캔본 송부 * (이의신청 처리 예외) ①해당 채용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② 평가와 관련한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면접위원 등)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③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사항 * 평가기준 및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 문의 및 개별적인 피드백 등은 이의신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답변하지 않음

○ 부정합격자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서는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며, 관련자는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단은 채용비위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사실 인지 시 「직원 채용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헬프라인 레드휘슬(http://www.redwhistle.org) * (구제시기) 피해발생 인지 후 즉시 * (피해자 구제)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후 적정 전형단계 시험 기회 부여

○ 공단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사장의 허가 없이 겸직 및 영리활동(사업자등록 등)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속병원 인사담당에게 문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1] 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3.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6의4. 공단 입사 이전 또는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 의무자로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지나지 아니한 자
9. 장기요양이 필요한 전염성 질환자 및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인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의학적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1-2]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6.4.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붙임 2-1]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응 시 원 서

접수번호	
응시직군 및 직렬	별정직 의사 (이비인후과)

성 명	(한글) (한자)
연락처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메 일	

사회형평사항	보훈대상	□ 해당 (가점비율 %) □ 비해당	장애여부	□ 해당 □ 비해당

경력사항	근 무 처	재직기간	직 위	업무수행내용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 . . ~ . . .(년 월)		

자격(면허) 취득사항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면허)증	발급기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유의사항>

1. 응시자 부주의로 **응시 자격요건에서 정한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으로 간주**함.
2. 정해진 응시원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접수 시 부적격 처리됨.
3.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20 . . .

응시자 (인)

근 로 복 지 공 단 이 사 장 귀 하

응시원서 작성 안내

1. 사회형평 사항

○ 해당 자에 한하여 기재

2. 경력 사항

○ 해당자에 한해 해당 면허 취득이후 동일 업무 관련 직장 근무경력 필히 기재

- '경력' :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

3. 자격취득 사항

○ 채용분야 면허 혹은 자격증은 반드시 기재하고 기타 각종 자격증(전산, 전문자격 등) 취득사항 기재

4.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유의사항

※ 지원자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5. 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자 기 소 개 서

※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지원동기, 관련경력, 그 외 자격 등 직무관련 능력, 상벌사항, 논문 등 연구실적, 본인의 장점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 작성기준 : 한글프로세서(한글, 신명조, 14 포인트), 표지제외 A4 3장 이내

※ **지원자 성명, 연령, 출신학교명, 출신지역명, 가족관계 등 실력평가와 무관한 사실 언급은 불가하며 간접적으로도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붙임 2-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근로복지공단은 채용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주체(응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유의사항> 응시자가 선택한 지원정보 및 가산점 정보 유무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정보주체의 동의	영구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 필수적 정보 수집·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채용심사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교육, 경력, 자격취득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및 선발 참고 자료	정보주체의 동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 · 이용 항목	수집 · 이용 목적	수집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사회형평(장애, 보훈 등) 해당여부	편의제공 적용여부 확인 등 채용절차 진행, 우대 및 선발 참고 자료	정보주체의 동의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80일까지

※ 정보주체는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편의제공 및 가산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취업지원, 장애관련 제공기관, 학위수여기관, 자격증 시험 시행기관 등	입사지원서 접수 및 자격 진위여부 확인	성명, 생년월일, 취업지원 대상 관련사항	조회결과 회신 후 즉시 폐기

※ 정보주체는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불합격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응시자(본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직무기술서

【 NCS 기반 직무기술서 : 의사(이비인후과) 】

<table>
<tr><td rowspan="3">직무
분야</td><td rowspan="3">의사</td><td colspan="4">NCS 분류체계</td></tr>
<tr><td>대분류</td><td>중분류</td><td>소분류</td><td>세분류(특화분류)</td></tr>
<tr><td>06.보건/의료</td><td>02.의료</td><td>01.임상의학</td><td>01.양의학치료</td></tr>
<tr><td>주요사업</td><td colspan="5">○ 산재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의료서비스, 전문재활서비스 등의 기능 수행</td></tr>
<tr><td>직무수행
내용</td><td colspan="5">○ <u>순음청력검사</u>, 자발 안진, 주시 안진, 두위 안진, 전기성문도검사, 비강도검사, 후각검사, 미각검사 등을 시행
○ 비염, 부비동염, 코성형, 비강종양, 코골이, 수면무호흡 등 비과를 주로한 이비인후과 환자의 진료 및 수술
○ 기타 과에 필요한 행정업무지원</td></tr>
<tr><td>전형방법</td><td colspan="5">공고문 참조</td></tr>
<tr><td>자격요건</td><td colspan="5">(필수)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td></tr>
<tr><td>필요
지식</td><td colspan="5">○ 질병의 진행상태에 따라 전이개 누공 절제술, 고막 절개술 및 환기관 삽입술, 등자골 수술, 유양동 절제술, 안면신경 연결술 등의 외과수술을 하거나 약물을 처방·치료
○ 청각기관의 손실이나 기타 상해에 의한 청각의 손실정도 또는 후두의 질병 및 손상으로 인한 언어의 손실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반 검사 지시(검사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강구)</td></tr>
<tr><td>필요
기술</td><td colspan="5">○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로 이비인후과 비과 영역의 전반적인 수술적 치료 술기를 습득한 자</td></tr>
<tr><td>직무수행
태도</td><td colspan="5">○ 다양한 환자를 응대하는 태도, 진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환자 안정화 능력, 여러 임상분야와의 협업 능력, 환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태도, 맡은 업무에 대한 끈기, 협력적인 태도, 환자에 대한 관찰능력</td></tr>
<tr><td>직업기초
능력</td><td colspan="5">○ 의사로서의 소양을 갖춘자, 직업윤리, 환자 및 의료진과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정보능력</td></tr>
<tr><td>참고
사이트</td><td colspan="5">○ www.ncs.go.kr 홈페이지 → NCS 학습모듈 검색</td></tr>
</table>

[붙임 4] 채용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성명		채용분야	
이메일		연락처	
이의신청 내용	※ 신청시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발표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 육하원칙에 의해 자세하게 기술하되,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 주시고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만 기재 바랍니다. ○ 채용과 무관한 문의, 질의사항,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사항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회신은 이메일 또는 연락처를 통해 시행합니다. ○ 사실관계 확인기간에 따라 답변이 늦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